

의안번호	제 122 호
의 결	1996. 12. 14.
년 월 일	(제 59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6. 12 . 10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2. / 0 .

의 안	122
번 호	

제 출 자 : 기 획 감 사 실 장

1. 제안이유

1996년 7월 1일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조직·사무및
실과소명칭의 변경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획실장 → 기획감사실장

○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을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3. 의안전문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췌 : 별첨

6. 사전협의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 해당사항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자료 : 별첨

9. 제안자 의견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구·조직·사무의 실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안)	개정 (안)
제2조(구 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u>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u>	제2조(구 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기획감사실장</u> - - . ④ - - - - - - - - - - <u>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u>